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4150 판결 [제작공사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8. 5 선고 2020나141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7가합19565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현희철, 김웅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 종결**2021. 6. 10.

**판결 선고**2021. 8. 5.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7가합19565 판결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502,820원과 그중 73,155,82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20. 4.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8,347,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21. 8.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2,728,9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이 사건의 계약 해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제작·설치 공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원청 공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위 공사"를 "이 사건 원청 공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 [업무의 대가 및 거래 조건]

① '갑'과 '을'은 아래 별첨1에서 정한 품목(이하 "물품"이라 함)을 제작, 공급하고 이에 '갑'은 '을'에게 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② '을'은 별첨1에서 계산한 대가를 '갑'의 마감일 전에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은 '갑'의 발주에 따른 '을'의 제작 및 구입, 운송, 반입, 설치, 준공승인 등에 관한 것으로 '갑'과 '을'의 이행사항을 규정하며, 그 내용은 본 공급계약서 및 첨부로 구성되며 제출 서류는 첨부 서식으로 작성한다.

④ '을'이 납품할 물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기일까지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을 검수 및 시운전을 24시간 이내에 '갑'의 사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을'은 물품 입고 30일 이전에 검사 및 시운전에 필요한 '갑'의 준비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2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첨1]

1. 공사명: F

2. 제작수량: 1식 [기구 Part] (FTE+OHCv, TALLER1) ) PNP, 총내 PNP, MCT)

3. 제작범위: 위 2항의 제작수량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   |   |    |             |             |
|---|---|----|-------------|-------------|
| 1 | F | 1식 | 970,000,000 | 970,000,000 |
|---|---|----|-------------|-------------|

|   |     |      |        |             |
|---|-----|------|--------|-------------|
| 1 | 계약금 | 30%  | 0      | 계약 후 14일 이내 |
| 2 | 중도금 | 60%  | 기성 지급  |             |
| 3 | 잔금  | 10%  | 하자이행증권 |             |
|   | 합계  | 100% |        |             |

## 6. 납품일정

1) 제작완료 : 고객사 반입일정에 따름

2) 설치완료 : 2017. 2. 28.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815,100,000원"을 "81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적어도" 다음에 "83%를 넘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을 제8, 9, 22호증"을 "을 제8, 9, 22, 24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4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을 제24호증의 4,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공사 중단과 원고의 해지통지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을 위한 회의를 3회 진행하였으나 정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4.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시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2.5%로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560,175,000원이라는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피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나. 피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판단

1) 피고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2쪽 제4행부터 제13쪽 제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앞서 든 증거들에 제1심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감정인이 2017. 6. 30.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각 지출한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기성고를 산정하기로 하는 감정 방법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중국 청두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 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후 몇 차례 정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1심 진행 중에도 기성고 산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원고는 원·피고가 실제 투입한 비용에 기초하여 피고가 투입한 비용의 비율로 기성고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피고 사이의 원래 계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가 투입한 비용으로 피고의 기성고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모두 S이 감정인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피고의 의견을 청취한 후 S을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법원의 2018. 12. 13.자 제2차 감정기일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기성고 산정방법과 달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기성고를 산출하는 데 다툼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⑤ 제1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원·피고와 함께 5차례 회의를 거쳐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각 실제 투입한 비용을 확정하고, 원·피고가 지출한 비용 대비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비율로 기성고를 산출하였다.

### 3)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 가) 감정인이 산정한 기성고 비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3. 기성고 비율' 란의 기재와 같이 52.5%이다.

#### 나) 감정인이 산정한 기성고 비율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감정인이 기성고 비율을 약 55%로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한 기성고 비율이 최소한 83% 이상 90%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거나 적절한 방법과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본래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다)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아래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 기재 각 항목2) 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인이 기성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원·피고의 지출비용에 관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

|   |                                                      |                                                             |                                                                                                                                                                                                                                                                                                                                                                                                                                                                                                                                                                                                                                                                                                                                                                                                                                                                                                                                                                                                                                                                                                                                                                                                                                                                 |
|---|------------------------------------------------------|-------------------------------------------------------------|-----------------------------------------------------------------------------------------------------------------------------------------------------------------------------------------------------------------------------------------------------------------------------------------------------------------------------------------------------------------------------------------------------------------------------------------------------------------------------------------------------------------------------------------------------------------------------------------------------------------------------------------------------------------------------------------------------------------------------------------------------------------------------------------------------------------------------------------------------------------------------------------------------------------------------------------------------------------------------------------------------------------------------------------------------------------------------------------------------------------------------------------------------------------------------------------------------------------------------------------------------------------|
| 1 | FTE PNP<br>양중비(H)                                    | 8,000,000                                                   | 원고는 피고가 PNP 양중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양중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직접 양중업체인 T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8항에 따르면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SET-UP 장비인 양중기도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장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소계                                                   | 8,000,000                                                   |                                                                                                                                                                                                                                                                                                                                                                                                                                                                                                                                                                                                                                                                                                                                                                                                                                                                                                                                                                                                                                                                                                                                                                                                                                                                 |
| 2 | TALLER<br>설치비(BP)<br>96,000,000원<br>중<br>70,500,000원 | 141,000,000<br>(=<br>96,000,000<br>× 2 원고 자인<br>51,000,000) | ① 감정인은 갑 제15, 16, 51, 5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TALLER 설치비용을 합계 192,000,000원을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산정한 비용 합계 192,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② 살피건대, 갑 제3, 4, 15, 16, 51, 52, 76, 78호증, 을 제1, 2, 18, 20, 21, 3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TALLER 설치비 합계 192,000,000원 전부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③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TALLER 16,000L 6대와 8,500L 1대 합계 7대를 조립제작하고, 원고가 제작된 TALLER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TALLER 7대의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고, 그중 8,500L 1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까지 완료하였다.④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TALLER 설치비는 합계 192,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TALLER 7대를 처음부터 제작조립 및 설치하기로 한 비용과 거의 맞먹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설치비로 피고가 견적하였던 약 51,000,000원보다 약 4배에 이르며,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원고와 피고가 정산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TALLER 설치비를 51,000,000원이라는 전제로 자료를 작성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직접 TALLER 비용 192,000,000원을 지출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다만 원고는 TALLER 설치비(BP) 96,000,000원과 TALLER 설치비(BO) 96,000,000원을 E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원청공사 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정리한 내부 자료, 투입된 인력에 관한 자료와 E의 구매발주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갑 제16, 51, 52, 76호증).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

|                                                      |                              |             |                                                                                                                                                                                                                                                                                                                                                                                                                                                                                                                                                                                                                                                                                                                                                                                                                                                                                                                                                                                                                                                                                                                                                                                                                                                                                                                                                                                                                                              |
|------------------------------------------------------|------------------------------|-------------|----------------------------------------------------------------------------------------------------------------------------------------------------------------------------------------------------------------------------------------------------------------------------------------------------------------------------------------------------------------------------------------------------------------------------------------------------------------------------------------------------------------------------------------------------------------------------------------------------------------------------------------------------------------------------------------------------------------------------------------------------------------------------------------------------------------------------------------------------------------------------------------------------------------------------------------------------------------------------------------------------------------------------------------------------------------------------------------------------------------------------------------------------------------------------------------------------------------------------------------------------------------------------------------------------------------------------------------------------------------------------------------------------------------------------------------------|
| 1                                                    | FTE PNP<br>양중비(H)            | 8,000,000   | 원고는 피고가 PNP 양중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양중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직접 양중업체인 T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8항에 따르면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SET-UP 장비인 양중기도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장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p>의하면, 원고는 BP TALLER 설치비, BO TALLER 설치비 각 96,000,000원씩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BT'으로 발주서가 재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갑 제7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P TALLER 설치비, BO TALLER 설치비는 2017. 6. 21. 'BT(Fuzhou)' 공사현장에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TALLER 설치비 합계 192,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F(Chengdu)']에 관한 것인지, 나아가 그 설치에 192,000,000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나머지 원고가 정리한 내부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TALLER 설치비 19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㉔ 원고는, BP TALLER 및 BO TALLER의 각 설치비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라 'BT(Fuzhou)'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발주서가 발행된 것은 E 측에서 위 각 TALLER 설치에 대한 발주서를 'BT' 공사현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위 각 TALLER 설치에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7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의 요구에 따라 청구서 품목과 금액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TALLER 설치비용 합계 192,000,000원의 금액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㉕ 감정인이 TALLER 설치비 합계 192,000,000원을 원고의 지출 비용으로 산정한 감정결과에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설치비용이 당초 계약 당시 정한 금액보다 3배 이상 과도하게 투입된 이유에 대하여 공사 중단 이후 인수인계 문제, 피고가 납품한 TALLER들이 부분조립 또는 부품 상태로 납품된 문제 때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정인은 위 ㉓, ㉔에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설치하는 데 19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TALLER의 사양이나 규격이 당초 원고에게 의뢰한 것과 같은 것인지, 설계가 변경되거나 설치된 공사현장이 달라진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지 못하였다.㉖ 따라서 TALLER 설치비 합계 192,000,000원 전부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가 TALLER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설치를 완성하는 데 합계 51,000,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TALLER 설치비 합계는 원고가 자인하는 51,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별지 1「이 법원이 인정한 비용산정내역」 중 '2. 원고의 지출비용' 순번 1 참조).</p> |
| TALLER<br>설치비(BO)<br>96,000,000원<br>중<br>70,500,000원 |                              |             |                                                                                                                                                                                                                                                                                                                                                                                                                                                                                                                                                                                                                                                                                                                                                                                                                                                                                                                                                                                                                                                                                                                                                                                                                                                                                                                                                                                                                                              |
| 3                                                    | A 관리자<br>인건비 중<br>3,785,687원 | 3,785,687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화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피고가 BU, U, BV, BW에게 지급한 6월 인건비 내역이 잘못 산정되어, 이를 수정하면 'A 관리자인건비'는 3,785,687원이 감액되어 합계 114,425,7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액된 '3,785,687원' 부분은 원고의 지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4                                                    | 제관업체                         | 101,613,654 | 원고는 피고가 제관품 조립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원고가 새로 제관품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1항에 따르면                                                                                                                                                                                                                                                                                                                                                                                                                                                                                                                                                                                                                                                                                                                                                                                                                                                                                                                                                                                                                                                                                                                                                                                                                                                                                                                                  |

|   |                         |             |                                                                                                                                                                                                                                                                                    |
|---|-------------------------|-------------|------------------------------------------------------------------------------------------------------------------------------------------------------------------------------------------------------------------------------------------------------------------------------------|
| 1 | FTE PNP<br>양중비(H)       | 8,000,000   | 원고는 피고가 PNP 양중을 해야 하는데, 기능이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양중비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직접 양중업체인 T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8항에 따르면 SET-UP 장비는 전량 사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SET-UP 장비인 양중기도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장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제관품은 전량 피고가 아닌 원고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5 | 가공비용                    | 4,590,000   | 이 부분 비용은 제관품을 가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위 순번 4. 기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6 | 사다리 및<br>프로파일 중<br>프로파일 | 11,422,445  |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지 않은 사다리와 프로파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함께 13,422,44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 중 사다리 비용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11,422,445원은 프로파일 자재 구매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별첨 2. 2항에 따라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소계                      | 262,411,786 |                                                                                                                                                                                                                                                                                    |
|   | 합계                      | 270,411,786 |                                                                                                                                                                                                                                                                                    |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에서 위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기재 각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별지 1 「이 법원이 인정한 비용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1. 가. 피고의 비용'은 1,010,908,874원, '1. 나. 원고가 피고 대신 지출한 비용'은 72,550,820원(= 감정인이 산정한 80,550,820원 - FTF PNP 양중비 8,000,000원)으로서 '1. 피고의 지출비용'은 합계 1,083,459,694원(= 1,010,908,874원 + 72,550,820원)이고, '2. 원고의 지출비용'은 723,546,809원(= 감정인이 산정한 985,958,595원 - 각 TALLER 설치비 합계 141,000,000원 - A 관리자 인건비 3,785,687원 - 제관업체 101,613,654원 - 가공비용 4,590,000원 - 프로파일 11,422,445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59.9% [= 1,083,459,694원 ÷ (1,083,459,694원 + 723,546,809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중 배척하는 부분에 관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중 '1. 가. 피고의 비용' 부분에 대하여, 피고 직원의 인건비 78,776,002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부분 지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피고 직원들의 인건비 내역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의 인건비 내역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다가(2020. 9. 2.자 준비서면),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미처 제출하지 못하여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2021. 5. 12.자 준비서면) 등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제1심에서 인건비와 관련된 자료들[특히 을 제13호증의 33(당사인건비외)]을 제출하였고, 감정인이 피고의 비용 중 '당사(피고)인건비외'라는 항목으로 115,510,757원을 산정한 점(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1. 가. 피고의 비용' 순번 35 참조), ③ 피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 중 'BX, P, BY, BZ'의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였던 인건비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내역 전부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바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졌다거나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중 '1. 나. 원고가 피고 대신 지출한 금액'에서 순번 3 내지 6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 각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 3 | 한국인 일용직 인건비(I)          | 피고는 알 수 없는 비용이 투입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7. 2. 10. 이후 발생한 비용이어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6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SET-UP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I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송금받은 자는 CA(V)]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2017. 2. 10.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이를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한국인 일용직 항공료 및 비자(J/K/L) | 피고는 이 항목의 비용이 원고의 직원인 U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 69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법무법인 C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J, K, L에 대하여는                                                                                                                                                                                                                              |

|   |                     |                                                                                                                                                                                                                                                                                                                                                                                                   |
|---|---------------------|---------------------------------------------------------------------------------------------------------------------------------------------------------------------------------------------------------------------------------------------------------------------------------------------------------------------------------------------------------------------------------------------------|
| 3 | 한국인 일용직 인건비(I)      | 피고는 알 수 없는 비용이 투입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7. 2. 10. 이후 발생한 비용이어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6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SET-UP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I에 대한 인건비를 대신 지급[송금받은 자는 CA(V)]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2017. 2. 10.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이를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본래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U가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된 사실(을 제22호증 제23, 24쪽), 원고가 U에게 'C 항공, 비자' 명목으로 1,278,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M: MFTE 복합판 4T(I/V) |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 MFTE 복합판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6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K/L)     | 피고는 이 항목의 비용이 원고의 직원인 U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71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K, L에 대하여는 본래 피고가 노임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7. 6. 29.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받았고, 원고가 K, L에게 각 5,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이를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는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중 '2. 원고의 지출비용' 등에 대하여도 아래 표 각 항목 기재와 같이 다룬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바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감정이 이루어졌다거나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       |                            |                                                                                                                                                                                                                                                                                                                                                                     |
|-------|----------------------------|---------------------------------------------------------------------------------------------------------------------------------------------------------------------------------------------------------------------------------------------------------------------------------------------------------------------------------------------------------------------|
| 3     | BQ 인건비 [BR]                |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인원의 실제 작업시간과 인건비 지출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N, V, CC, CD, CE, CF, CG, CH 등의 업체들이 투입한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CI 항공료 및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내역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산정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건비 내역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인원이나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거나,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지출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4     | A 관리자 인건비                  | 피고는 원고의 관리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인건비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업무 범위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거나, 원고가 지급한 출장비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여 산정되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사정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5~7   | 통역, 안전, 소주팀 각 인건비          | 피고는, 이 부분 각 인건비 중에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안전 인건비는 원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므로, 위 비용들이 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10~12 | 현지인건비(N), 한국인 일용직 인건비, 한국인 | 피고는 이 부분 지출 내역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고, 특히 현지인건비(N)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전인 2017. 1. 2.부터의 계약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지인건비(N)는 2017. 2. 10.부터 2017. 6. 14.까지 발생한                                                                                                                                                                                            |

|    |              |                                                                                                                                                                                                                                                                                                                                                                     |
|----|--------------|---------------------------------------------------------------------------------------------------------------------------------------------------------------------------------------------------------------------------------------------------------------------------------------------------------------------------------------------------------------------|
| 3  | BQ 인건비 [BR]  |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인원의 실제 작업시간과 인건비 지출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N, V, CC, CD, CE, CF, CG, CH 등의 업체들이 투입한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CI 항공료 및 인건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내역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과다 산정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건비 내역에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인원이나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거나,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지출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일용직 항공료 및 비자 | 현지 작업자의 인건비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5 | 조립공장(BS)     | 피고는, 이 부분 지출 내역이 조립공장 임대 관련 경비에 해당한다면, 조립공장을 마련하는 업무는 원고의 의무이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지출 내역은 피고가 제작·조립하지 않은 설비나 미흡하게 제작·조립된 설비를 제작·조립하기 위하여 투입한 현지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비용이 조립공장 임대 관련 경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양산대응 경비      | 피고는, 양산대응(양산대기) 비용은 설비의 제작·설치 후 시운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를 'SET-UP(셋업)'이라 한다]에서, 시운전이 끝나고 대량생산할 때 수급자인 피고 측 직원 등이 현장에서 협력하며 대기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는데, 원고의 지출비용 중 피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양산대응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1. 1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 감정결과에 "양산대응 경비"라는 명목으로 지출경비를 산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다.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1)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액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하였던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9.9%이므로, 피고가 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581,030,000원(= 970,000,000원 × 59.9%) 및 부가가치세 58,103,000원(= 581,030,000원 × 10%) 합계 639,133,000원(= 581,030,000원 + 58,103,000원)이다.

2)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원고의 이사인 O의 요청에 따라 O에게 반환한 사실, 원고가 위 O으로부터 12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695,100,000원(= 815,100,000원 - 120,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P과 원고의 이사인 O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120,000,000원을 위 0이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회수한 120,000,000원은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55,967,000원(= 피고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695,100,000원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639,133,000원)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5,96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21. 8.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7.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9. 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원고가 대납한 비용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 나.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의 설치완료일은 2017. 2. 28.이고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설치완료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의 공사 중단·포기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합의 해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공사 중단·포기로 해제되었고, 위와 같은 공사의 중단·포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지체상금의 범위

1) 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의 시기는 설치완료일 다음 날인 2017. 3. 1.이다.  
2) 지체상금의 종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2017. 2. 10.부터 잔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79일이 경과한 2017. 4. 29.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포기한 다음 날인 2017. 2. 10. 무렵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원고는 실제로 2017. 2.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7. 2. 10.자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기성고 비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59.9%이므로, 원고가 선정한 후속업체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이 사건 계약상 약정 공사기간인 197일(2016. 8. 16.부터 2017. 2. 28.까지)에 잔여공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인 40.1%(= 100% - 피고의 기성고 비율 59.9%)를 곱한 일수인 79일(= 197일 × 40.1%, '일' 미만은 올림)로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2017.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다른 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은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소결론(지체상금의 액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체상금의 액수는 약정 설치완료일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2017. 4. 29.까지 60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3/1,000에 따라 계산한 174,600,000원(=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금액 970,000,000원 × 60일 × 3/1,000)이다.

## 라. 지체상금의 감액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더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SET-UP 과정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원고가 제공해야 하는 양중기에 기능상 문제가 있어 새로운 양중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가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공하기로 한 제관품, Profile 등 사급품의 반입이 지체된 사정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원청인 E의 다른 파트 공사로 인해 원고의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할 무렵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은 3,146MD3) 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투입한 인력은 5,440MD로4)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의 약 170%(= 피고의 투입 인력 5,440MD ÷ 예상 인력 3,146 MD × 100)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 포기한 점, ⑤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이상으로 7071MD의 인력을 투입한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인력의 약 397% [= (피고의 투입인력 5,440MD + 원고의 투입인력 7071MD) / 예상 인력 3,146 MD × 100,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된 점, ⑥ 위와 같은 인력의 과다 투입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당초 이 사건 공사 자체가 약정 공사기간인 197일 이상이 필요한 공사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⑦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3/1,000은 통상의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 1/1,000의 3배에 달하여 그 금액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위 지체상금 174,6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30%로 감액한 52,380,000원(= 174,600,000원 × 30%)으로 정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52,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2017.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지체상금에 대한 2017. 2. 10.부터 2017. 9. 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1,502,820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5,967,000원 + 원고가 대납한 비용 73,155,820원 + 지체상금 52,380,000원)과 그중 원고가 대납한 비용 73,155,82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20. 4.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합계 108,347,000원(= 55,967,000원 + 52,38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부터 2021. 8.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동기**

**판사조효정**

**판사이영미**

**별지**

-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TOLLER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TALLER의 오타로 보인다.
- 2) [인정하지 않는 비용내역표] 중 순번 1 부분은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가운데 '1. 피고의 지출비용' 중 '나. 원고가 피고 대신 지출한 금액' 순번 2 FTF PNP 양중비(H) 부분이고, 순번 2 내지 5부분은 별지 2 「감정인의 비용산정내역」 중 '2. 원고의 지출비용'의 TALLER 설치비(BP) 및 TALLER 설치비(BO), A 관리자 인건비, 제관업체, 가공업체, 사다리 및 프로파일 중 사다리 부분이다.
- 3) Man Day, 즉 1인의 1일 투입인력의 량
- 4)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서 231쪽),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1. 17.자 사실조회결과(사실조회회신서 13쪽, 첨부 3. C-4. A B MD 요약본) 각 참조
- 5)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